한국 가족 및 친족 개념에 대한 연구 : 가족관련 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milies and Kinship Concepts in Korea: A Focus on Family Related Law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성 미 애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iai Sung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 분석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milies and the kinship concepts in Korean laws based on meanings, boundaries, and functions. Korean culture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traditional familism to democratic individualism, yet this is not a simple transition. In recent times, many people have come to look at family life from both tradition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so their family values are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Therefore, this creates many family conflicts. As a result of this problem, I have analyzed families and the kinship concepts in Korean laws based on meanings, boundaries, and functions. Because laws regulate and reflect our everyday life,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se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meaning of family in Korean laws is to respect other family members, and democratic family relationships. Second, the family boundaries a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laws. The core boundary is the nuclear family, but in addition to the nuclear family, the parents of the wife and husband, the family of origin and the kin living together are included in the family member regulations. Third, the functions of the family are caring, education, rules for the living place, child discipline, supporting each other, guardianship for the family members, succession of family assets, and legal accusation rights. Ki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child guardianship, permission of a minor to marry, and authority over legal incompetency.

Corresponding Author : Miai S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69 Dongsung-dong, Jongno-gu, Seoul, 110-791, Korea Tel: +82-2-3668-4648 Fax: +82-2-3668-4188 E-mail: eliza_s@knou.ac.kr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31-C0026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ST,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7-331-C00260).

Therefore, there are some contradictions between individualism and patriarchy in Korean laws, and these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in the everyday life.

주제어(Key Words) : 가족 개념(family concept), 친족 개념(kinship concept), 가족 의미(family meaning), 가족 범위(family boundary), 가족 기능(family function), 가족관련 법(family related law).

Ⅰ. 서 론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을 가족관련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을 통해 진단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가족학 연구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전통 가부장제 가족이 해체되면서 어떤 가족의 모습으로 재구성되고 있는가이다. 즉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존재의 일차적인 단위를 독립적인 인간에서 구하지 않고 음양의 결합에 의해 탄생되는 '가(家)'에서 찾았다. 그리고 '가(家)'의 개념을 통상적으로 조부모를 포함하는 직계가족부터 삼종(三從)을 포함하는 유복친(有服親)의 의미로도 사용해 왔으며, 같은 집안(堂內)이라고 표현하는 고조(高祖)를 같이 하는 8촌 범위의 친족을 '가(家)'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이광규, 1986, p. 299). 이처럼 전통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가족 개념은 핵가족 개념보다는 훨씬 넓은 부계친까지 다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家)'의 개념이 해체되고 난 뒤 재구성되는 가족의 모습이 과연 변화된 사회 모습을 반영하며, 사회구성원 및 가족구성원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재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성미애, 2006b;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2000; 이광자, 1988; 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 2002; 이재경, 1999; 장경섭, 1994; 장현섭, 1994; 조정문, 1997; 한경혜, 윤성은, 2004 등)은 산업화 이후 한국 가족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부계 가부장제 가족 및 친족 구조가 해체되면서 부계 가족의 원리는 약화되고 부부중심의 핵가족 이념이 강화되는 양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부계 가부장적 가족 및 친족 구조가 해체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적극적인 구조의 재구성이 아니라 가족 및 친족 구조의 범위와 기능의 축소라는 소극적인 재구성(옥선화 외, 2000)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 가족은 근대적인 구조와 전통적인 구조가 혼재된 중층적인 구조 속에서 가족관계 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한 개인에게도 중층적인 구조가 투영되어, 어떤 일관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수준에서 편의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면서 결국은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성미애, 2006b)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가족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를 파악하려는 연구들(김규원, 1995; 김혜숙, 김은희, 김항원, 유처인, 장현섭, 1999; 박부진, 1996; 성미애, 2006a; 양옥경, 2001; 유계숙, 유영주, 2002; 이영숙, 박경란, 2002; 이재경, 1999; 조은숙, 옥선화, 1995 등)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 가족을 진단하는 한 변수로 가족 개념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흔히 사람들은 가족을 '실체'를 가진 하나의 고정된 사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가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되기(최연실, 조은숙, 성미애 역, 1997, viii) 때문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고 친족과 연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관계를 지각하는 범위나 멀고 가까움에 대한 인식은 사람이 처해있는 사회적, 가족 내 상황에 따라 다양해진다. 이처럼 가족은 시간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회변화에 민감한 체계(Carter & McGoldrick, 1999)로, 가족 개념의 변화 내용과 방향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 개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범주는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면서 어떤 가족 형태까지 가족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합의 수준을 고찰하는 연구들(김규원, 1995; 유계숙, 유영주, 2002; 이영숙, 박경란, 2002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질문지 조사법을 통해서, 핵가족이나 직계가족만을 정상가족 범위에 넣어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가족형태 중 어느 형태의 가족까지 가족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 범주는 개인의 가족생활을 이해하는 한 요인으로 가족 개념을 살펴본 연구들(이재경, 1999; 성미애, 2006a 등)로, 주로 연구대상자를 심층면접하면서 가족 개념의 차이가 가져오는 관계의 갈등과 가족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가족 개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가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가족 간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 개념을 살펴보는 선행연구의 맥을 이으면서도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현재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1]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을 분석의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관계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족은 결혼이나 입양, 혈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인간관계라고 본다. 따라서 가족 및 친족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가정생활에 대한 전통이나 관습, 종교적 규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족이나 친족 관계가 형성되면 거기에 따른 신분관계나 재산관계가 만들어 진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한 전통이나 관습, 종교적 규율은 그 자체가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기초로 하는 현대 민주법치국가의 원리와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은 가족구성원의 권리, 의무와 행동 기준을 규정하여 가정 내 질서를 유지하고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다른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 처리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김엘림, 조승현, 2005, p. 2)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통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혼란된 시점에서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이 다른 어떤 규정보다도 가족 및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법에서 가족 및 친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대상과 서비스 대상을 규정하며(한경혜, 성미애, 진미정, 2006, p. 198), 부양 및 보상 의무를 규정하는 데도 중요한 준거가 되는 등 실제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된다.

이처럼 개인-가족-국가로 이어지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개인 및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가족 및 친족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2005년 3월 2일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어 온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호주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범위가 결정되던 조항(민법 제779조)이 개정되면서 가족의 범위 규정이 바뀌었다.

따라서 지금은 법에 제시된 가족 및 친족 개념이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른 법 규정과 일관된 맥락에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시점이다. 실제로 법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맥락의 하나로, 국가의 관심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러한 모습으로 구축하는(construct) 효과를 가진 텍스트이다(Glendon, 1989, pp. 4-6: 양현아, 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법 조항이 국가가 원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실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을 통해서 현재 가족 및 친족 개념의 양상을 진단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학문적으로 한국 가족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해 보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교육 등 사회교육 현장이나 가족상담 및 치료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지정책의 수혜대상과 서비스 대상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을 가족관련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을 분석하면서 한국 가족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법과 선행연구를 찾아서 분석하는 문헌연구법을 이용하였다. 문헌연구법은 연구자가 탐구해 보고 싶은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문헌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관심 있는 영역의 사회현상에 대한 통찰을 얻고, 그에 관한 이론이나 가설을 검토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실질적 연구방법이다(김경동, 이온죽, 1994, p. 308).

따라서 문헌연구법을 통하여 법에 담지 되어 있는 가족 및 친족 개념을 분석한다면, 본 연구의 목적인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법에서 보이는 가족 및 친족 개념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법이념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지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김규원, 1995; 성미애, 2006a; 양옥경, 2001; 유계숙, 유영주, 2002; 이영숙, 박경란, 2002; 이재경, 1999; 조은숙, 옥선화, 1995 등)에서 사용한 가족 개념을 참조하여 가족 및 친족 개념을 가족 및 친족의 의미, 범위 및 기능이라는 하위 영역으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개념만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家)의 개념이 지금의 친족 범위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가족 및 친족 개념 모두를 고찰하여야만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어떻게 해체 ·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및 친족 개념 모두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가족 및 친족의 의미 분석에서는 가족 및 친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및 친족의 범위 분석에서는 어떤 관계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가족 및 친족이라고 칭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및 친족의 기능 분석에서는 가족 및 친족이 수행하는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및 친족의 의미, 범위 및 기능 등이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는 법은 구체적으로, 헌법, 민법, 형법,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산림조합법, 형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국가공무원법 등이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이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일차 자료가 되었으며, 그 외 가족 및 친족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족 및 친족 개념

많은 사람들은 사회제도 중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변화하는 제도이며 다차원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Murdock(1949: 김혜선, 박혜인, 옥선화, 2003, p. 4에서 재인용)은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 하며, 또한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머독은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 사이의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의 측면보다 가족의 외형적 구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하였다.

반면, Lévi-Strauss(1956: 김혜선 외, 2003, p. 4에서 재인용)는 "가족은 결혼으로부터 시작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지만 이들 이외에 가까운 친척이 포함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은 법적 유대 및 경제적, 종교적인 것 등의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기, 애정, 존경 등의 다양한 심리적 정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정의는 머독의 개념보다 확대된 범위의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가족의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Burgess와 Locke(1974: 김혜선 외, 2003, p. 4에서 재인용)는 "가족을 혼인이나 혈연 혹은 입양에 의해 결합된 집단으로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라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하고 공통의 문화를 창조, 유지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 간의 내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가족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념 규정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운명공동체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재경(1999)과 양옥경(2001), 변화순과 최윤정(2004) 등은 제도적, 법적, 이념적 차원의 가족 정의가 정태적인 개념 규정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실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가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된다는 Gubrium과 Holstein(1997)의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을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두 학자는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가족 정의에서는 심성의 변화와 관계성에 더욱 주목한다. 예를 들어, 변화순과 최윤정(2004)은 기든스(1997)나 스칸조니 등(1989)의 정의에 기반해서 가족은 "상호간에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지지를 기대하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의 구성"으로, 그들의 삶의 유형과 관계없이 "상호 책임감, 친밀감과 계속적인 돌봄의 근간"을 전달할 수 있는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가족특별위원회(2005)에서는 "가족이란 2명 이상의 개인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서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서로의 발달과 안정과 보호에 책임을 지는 사회적 집단 또는 제도이며, 혼인, 혈연, 입양, 동거에 의해 정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로, 친밀하게 상호 교류하며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의 단위"로 보았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보더라도 가족은 다차원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정의 자체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개념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수준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공존할 것인가 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가족 및 친족 개념을 살펴본다면, 전통사회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해체되면서 산업사회의 핵가족 중심의 생활양식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실제 가족 개념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김규원, 1995; 김혜영, 1996; 성미애, 2006a; 양옥경, 2001; 유계숙, 유영주, 2002; 이영숙, 박경란, 2002; 이재경, 1999; 조은숙, 옥선화, 1995 등)에서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구성된 순수한 핵가족만을 고수하는 단일한 개념에서 벗어나 이혼, 재혼, 입양 등에 의하여 형성된 관계도 가족으로 수용하는 경향임을 밝혀냈다. 즉 1990년대 출간된 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을 구성하는 요소

로 혈연과 사랑을 중시하며(김혜영, 1996), 가족을 인지하는 기준으로는 혈연성, 동일거주, 부계성 등을 들고 있는 것(김규원, 199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 시민과 일본 후쿠오카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인지범위를 살펴본 연구(변화순, 1992)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까지를 포함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밖의 인척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가족의 구조적 형태보다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기능 중심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자들(성미애, 2006a; 양옥경, 2001; 유계숙, 유영주, 2002 등)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가족구성원의 사회 및 가족 내 지위에 따라 가족 및 친족 개념에서는 차이를 보여, 중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연구(이재경, 1999)에서 중산층 여성들은 가족을 이원적으로 인식하여, 이념적으로는 핵가족의 가치를 지지하면서도 실제는 혈연중심의 직계가족의 범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가족 유지에 기여했음을 밝혀냈다. 가족 개념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들(김규원, 1995; 이영숙, 박경란, 2002)에 따르면, 세대 간 차이를 보여 청년 집단은 중년 집단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구조를 가진 가족도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데 반해, 중년 집단은 청년보다 가족의 범위를 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중년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 개념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성미애, 2006a)에 따르면, 중년 기혼 남성의 경우 자신의 생식가족뿐만 아니라 원가족 범위까지 포함해서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중년 기혼 여성의 경우는 주로 생식가족 중심으로 가족을 범주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 개념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성,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및 친족 개념에서의 가족구성원 간 인식 차이는 실제적으로 한 공간을 살아가는 가족에게는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도 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족 및 친족 개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가족을 수용해서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가족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본 가족 및 친족 개념이 사회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라는 말처럼 모든 사회에는 반드시 그 사회에 특유한 법이 존재한다. 또한 예링이 말한 것처럼 '법은 사회생활의 조건' 이기도 하다(이병화, 2003, p. 10).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가족 및 친족생활은 법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법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특히 법을 가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법에는 가족 및 친족원 간 친권, 부양청구권, 상속권, 보상권 등 여러 가지 권리-의무 관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정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법에 규정된 가족 및 친족 개념 규정이 변화된 가정생활이나 가족구성원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할 때에는, 그리고 법체제 내에서도 일관된 가족 및 친족 개념을 지향하지 못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법이 가져야 할 공신력에도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이처럼 가족 및 친족이라는 개념에는 이념적, 법적, 제도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원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배경이나 관계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전통 한국 사회의 가족 및 친족 개념

한국 가족의 경우 17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그 전·후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 조선전기까지는 서류부가의 혼속에 기초하여 부계친만 우선시되는 가족 및 친족 개념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명호(1987)는 고려시대 친족조직의 원리는 조상을 기준으로 그 혈연관계를 따지기보다 특정 개인인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망을 다변적으로 형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려의 친족관계는 조상을 중심으로 한 출계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측적 친족(bilateral kindred), 즉 친족 조직에서 혈족관계의 친소(親疎)의 질서나 항렬 및 세대 간의 촌수로 따지기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적으로 구별되는 형태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친족조직 원리는 조선 전기까지 유지되었으나 조선후기에 오면 변화된다. 조선 후기의 이상적인 가족유형은 가구주 부부와 가구주의 직계비속 중 장남·장손 등의 가계계승자와 이들의 배우자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이었다(김혜선, 박혜인, 홍형옥, 2004, p. 23). 따라서 이 시기에는 4대조 고조(高祖)를 공동 조상으로 하는 8촌 이내의 당내친(堂內親)이 가(家)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였다(이광규, 1986, p. 299). 또한 조상숭배가 강조되면서 가계계승 및 봉제사의 주체가 되는 장남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부계친족집단에 해당되는 문중(門中)이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17세기 중엽 이후의 부계가부장적 친족제도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뒷받침하는 보수적 사회제도로서 유지, 존속되었다. 1912년 공포된 [조선민사령]은 친족제도에 관한 부분을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 관습법이 1945년 해방되기까지 법원(法源)으로 적용되어 왔다(이효재,

1990, p. 24). 따라서 고려시대 이래 생산과 재생산의 가계를 함께 하는 가족생활 단위로서의 호구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아 호적이 호구조사의 수단이 되었으나,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식의 호적법을 적용한 민적법을 1909년 실시하여, 호구조사와는 별도의 영구보존 문서로 가족상의 개인 신분과 이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삼았다(최홍기, 2006, p. 131).

이러한 배경에서 호주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주의 지위를 호구상의 지위에서 가족상속자의 지위로 강화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호적 또한 현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호구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본적이 호적의 기반이 되었고, 기재 범위도 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동거자가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신분관계 속의 부계친족이 되었다(배경숙, 1988, pp. 109-110).

비교적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크게 혁신되었다고 보는 1990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호주상속제도는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호주승계제도로 변경되었고, 혈족과 인척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부계와 모계, 남편과 아내 쪽을 동일하게 하고, 상속에 있어서도 자녀간의 차등이 해소되어 출가한 딸도 다른 자녀와 균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고 호주의 상속분에서 가산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전근대적 부계 가부장제 법 규정에서 근대적 가족제도로 큰 변화를 보였다. 또한 2005년 [민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호주제를 전제로 하는 가족 개념 규정들은 삭제되었다. 이처럼 지금은 전근대적 가족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다른 법 조항도 법적 이념이나 구체적 규정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시점이다.

Ⅲ.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및 친족 개념을 가족 및 친족의 의미, 범위 및 기능이라는 하위 영역으로 세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 및 친족의 의미

가족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법 조항은 헌법,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이었다. 헌법은 혼인과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률로, 어떠한 법률이나 명령도 헌법에 위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의 최고법이며, 국가의 운영 원리 및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점에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엘림, 조승현, 2005, p. 3). 이러한 성격을 갖는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 (헌법 제36조)고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가족제도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임규철, 2002). 즉 헌법에서는 가족을 외형적 구성이나 기능 중심으로 본 Murdock이나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Lévi-Strauss보다는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하는 Burgess와 Locke의 관점에 보다 근접하면서, 가정생활의 핵심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의 가능한 형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은 가족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그러한 부분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는 개인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즉 전통적 가족관점에서 벗어나 자유주의적 가족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정생활의 기본 가치는 양성평등임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간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은 2008년 새로 개정되면서 가족의 의미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범위만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헌법과 국제협약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가족관계 법률들을 제·개정하는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김엘림, 조승현, 2005, p. 3) 중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과 가정을 따로 규정 하고 있었다. 즉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 이며,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규정하면서,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이념과 일관되게 가족과 가정생활은 개인이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가족가치를 가족구성원 모두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7조)고 제시하면서,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개인

의 권리를 강조하는 헌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정의 현실 생활에 초점을 두고서 가족원 모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 외 부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헌법의 하위법으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건강가정기본법 제5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적 가족 이념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족의 기준은 혼인, 혈연, 입양에 한정하는 등 가족 형성의 기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를 보이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여성발전기본법 제19조),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여성발전기본법 제24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가족이 남녀평등 교육의 초기 실천 현장이 되어야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헌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된 가족의 의미는 개인보다 가족이 중시되고 우선시되는 가족주의가치가 아닌 개별 가족원을 위한 가족의 존재 의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유일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개인-가족-지역사회-국가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이해하면서 개인이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아실현을 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공동체는 협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법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 형성의 근거는 여전히 전통적인 혼인, 혈연, 입양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의 의미는 결혼과 가족의 안정성 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통적 가족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을 존엄성과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화하여 개인의 주관적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구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관점(정현숙, 옥선화, 2008, p. 8)에서 가족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은 일정한 범죄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벌을 면제하거나 가중시키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김엘림, 조승현, 최정학, 2009, p. 15). 즉 가족관계 중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특수한 신분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가중과 감형 규정이 적용되어, 형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형법 제250조), 상해(형법 제257조), 중상해(형법 제258조),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폭행(형법 제260조), 유기(형법 제271조), 학대(형법 제273조), 체포 · 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 · 중감금(형법 제277조), 협박(형법 제283조)한 자는 형벌이 가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과 고소(형법 제328조), 절도(형법 제329조), 상습범(형법 제332조),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며,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물의 취득, 알선(형법 제362조) 및 상습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형법 제363조), 그리고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있는 경우(형법 제364조)에도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면 형을 면제하며,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며, 친족 간의 범행일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36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은닉 또는 도피한 경우(형법 제151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전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5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사사용인이나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의 관계보다 친족이라는 사적인 신분관계가 우선하여 근로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최저임금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즉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최저임금법 제3조)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는 가족 및 친족관계를 다른 관계에 우선하는 특별한 사적인 신분관계로 규정하면서 공적인 법질서를 뛰어넘는 특수한 관계의 집단으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2. 가족 및 친족의 범위

가족은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의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의식 속에서 '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성원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결정짓는 일정한 규칙(예: 혈연, 부계, 모계 등)과 가족성원 간에 무엇을 공유하고,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규범을 가진다(이재경, 1999). 특히 가족 및 친족의 범위 규정은 신분관계로부터 도덕적 책임, 경제적 교환, 정서적 친밀감 등과 관련되는 부양 관계와 상속 관계 등 여러 가지 권리,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범위 규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에 나타난 가족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를 보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민법 제779조)되어 있다. 즉 혈연을 가족 구성의 기본 전제로 보면서, 원가족과 생식가족,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방계혈족 일부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존 · 비속 모두가 포함되는 등 다세대로 확대되는 구성을 전제하면서 광범위하게 가족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에 폐지된 호적법을 대신하여 신설되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은 본인, 부모 · 양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모와 생식가족을 가족관계로 등록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나타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을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관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1조)하고 있다. 즉 생식가족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돌봄노동의 관계로 보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족을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규정[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하고 있다. 즉 생식가족과 부모는 혈연적인 신분관계에서 유족이 되며 조부모와 미성년 형제자매의 경우 자력으로 생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유족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가족을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인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위탁아동으로 규정(소득세법 제50조)하고 있다. 즉 부부를 가족의 기본으로 보며, 자력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로 보고서 피부양자 연령에 해당되는 원가족, 자녀(위탁아동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1촌 범위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를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혈연에 기초한 부양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가족어선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범위로 규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하고 있다. 즉 혈연과 혼인에 근거해서 가족의 범위를 정하되, 혈연 범위를 직계존 · 비속에 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법[3]에서는 선거인의 가족 또는 후보자의 가족을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 직계존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규정(산림조합법 제40조)하고 있다. 즉 본인과 배우자의 원가족, 생식가족, 인척을 포함하는 등 다세대를 전제한 혈연관계와 혼인관계를 포함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쪽도 동일하게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보면, 법에 나타난 가족의 범위는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가족의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범위는 생식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친 · 인척까지 망라되는 등 법에 따라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제와 실제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법에 나타난 가족의 범위는 혼인, 혈연, 입양에 기초한 신분관계에 한정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관점에 기초해서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과 하위법 간 불일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헌법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고 있으나 개정된 민법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법은 여전히 혈연과 혼인에 근거해서 가족을 규정하는 전통주의적 가족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법에 나타난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 측면에서는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 도덕 및 관습의 영역과 법의 영역은 분리되어야 하고(양창수, 1997, pp. 327-328), 법제와 실제가 꼭 동일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가족관계와 괴리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개정 민법 조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법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는 실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족의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특히 개정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는 실제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 즉 실제 인식하고 있는 가족 범위는 중년 남성의 경우 주로 자신의 생식가족과 원가족을, 중년 여성의 경우 자신의 생식가족을

2)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경찰공무원법(제16조), 국가정보원직원법(제13조)에서도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제53조),공직선거법(제10조)에서도 선거인의 가족 또는 후보자의 가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성미애, 2006a), 이에 근거해서 법에 나타난 가족의 범위를 보면 지나치게 넓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가족의 핵가족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안호용, 2000; 장경섭, 1991; 장현섭, 1993 등)은 외형상의 변화일 뿐 엄격한 의미로 볼 때는 여전히 확대가족의 이념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장에서 본다면 법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는 오히려 우리사회의 이념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가족이 단일한 가치관을 지향하거나 가족 가치관에서 동일한 수준의 합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대 및 성(性)에 따라 차이를 보여, 가부장제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이나 젊은 세대들은 근대적인 자유주의적 가족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옥선화, 성미애, 신기영, 2000)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에 나타난 전통주의에 입각한 가족의 범위 규정은 실제에서 권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법 조항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단적으로 구성해 보면, 조부모-손자녀는 생계를 같이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이 되나 시부모-며느리는 생계를 같이 해야 가족이 되는 등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의 가족 범위 규정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을 대체한 신분증명 공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범위에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민법의 가족 범위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가족치료학자 보웬(Bowen, 1976)은 원가족과의 관계가 생식가족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치료의 주요 목적은 가족구성원들이 원가족으로부터 적절히 분화함으로써 전체 가족이 자아분화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본다. 실제 연구들(고현선, 1994; 오청미, 최연실, 2006; 조은경, 정혜정, 2002; 홍지윤, 2003 등)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간 적응을 잘 하고, 결혼안정성이 높으며, 결혼만족도도 높고, 가족이 기능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원가족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 결혼생활에 방해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결혼을 개인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만남으로 보며, 가계계승을 결혼의 주요 목적으로 보는 전통주의적 결혼과는 달리, 자유주의적 결혼에서는 결혼을 성인과 성인의 결합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개념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한 존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원가족에서 부터 혈족까지 확대해서 가족을 보는 법 규정은 가족관계 측면에서 볼 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의 실제를 반영하고자 한 측면도 있어, 개정된 민법에서는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가족의 생활공동체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 의지가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그 범주는 친족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제시되어 있었는데,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구성자로 하며(민법 제767조) 구체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민법 제777조)하고 있다. 즉 친족 범위 규정은 여전히 조선 후기의 부계가부장제 전통에 따라 유복친 및 기제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당내친의 범위가 근간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제 전통에 양성평등 사상을 가미하여 모계쪽 친족 범위도 확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친족은 가족의 강한 혈통주의가 연장, 확대되어 의식되는 범위로, 조선 후기에서는 가족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정신적 안정을 제공해 왔다(김혜선, 박혜인, 홍형옥, 2006, p. 52)는 사실에서 볼 때, 민법은 여전히 부계가부장제 전통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계적으로 남녀평등 사상을 법 규정에 적용하면서 친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법제와 실제 간 괴리를 확대시킨 문제도 보이고 있다. 현대 한국 가족 및 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연구(옥선화 외, 2000)에 따르면, 현재 친족관계는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직계 근친관계로 축소되며 혈족 지향성을 보이는 등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는 해체되고, 부모와 기혼자녀 중심의 친족관계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볼 때 지나치게 넓은 친족 범위 규정은 현실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친족이라는 신분 관계로부터 부양 관계와 상속 관계 등 여러 가지 권리 ·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친족 범위 규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상욱, 2002)는 지적처럼, 친족 간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 결과 및 친족으로 인지하는 범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친족 범위를 재규정해야 할 것이다.

3. 가족 및 친족의 기능

가족의 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서의 가족 행동을 의미하며,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 · 존속이나 가족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다(유영주, 2004). 특히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은 가족 전체와 가족구성원들의 심리 ·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법에 나타난 가족의 기능을 보면, 민법에서는 가족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 · 교양(민법 제911조)하며, 부나 모는 친권자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친권을 행사하며(민법 제912조),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913조), 자의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징계권(민법 제915조)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 · 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음란물 · 유흥가 ·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여성의 임신 · 출산 · 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을 확산하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예: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하고 있다.

또한 가족 단위 돌봄노동 기능을 강조하여,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1조)하는 등 친족 간 간호를 당연한 가족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에서는 가족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어 아동 보호, 양육, 교육에 힘써야 하며,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3조, 교육기본법 제13조).

우리나라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지만, 대체로 애정교환과 정서적 지지 · 유대 기능, 성적 욕구의 충족 기능, 자녀출산 기능, 자녀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생산 기능, 소비 기능, 자녀 교육 기능, 가족성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휴식처로서의 기능, 오락 및 여가 기능, 종교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유영주, 김경신, 김순옥, 1996).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성인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결과(유계숙, 2004)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족이 건강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애정교환과 정서적 지지 · 유대 기능, 자녀교육 기능, 자녀사회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법에 제시된 규정은 어느 정도 가족에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국가 간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도 강화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건강가정기본법 제1조)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건강가정기본법 제2조)으로 하는 만큼, 가정과 지역사회 관계 맥락 하에서 가정의 물적 토대, 인적 자원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이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단위인 만큼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녀출산, 양육 및 사회화, 그리고 교육의 기능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가족의 기능이 법으로도 규정되어 자녀 양육, 보호에 대한 조항이 많았다. 그런데 자녀양육 및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은 아동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강조하는 데 비해, 민법 조항의 경우 여전히 전통적인 수직적 부모-자녀관계 맥락에서 자녀의 생활을 부모가 규제하는 조항이 많았다.

한편 친족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부양이었다. 부양의 의무를 살펴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민법 제974조)하고 있다. 이 때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975조).

그리고 친족은 조선 후기 부계친에 준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었다. 민법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민법 제928조), 이 후견인의 지정이 없을 때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민법 제932조)하고 있다. 그리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민법 제941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때(민법 제942조), 후견인으로서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민법 제945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때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민법 제808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족회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할 때 동의를 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민법 제951조)하고 있다. 또한 친족회는 후견사무를 감독할 수 있어,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953조)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이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영업 행위,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소송행위를 하는 일 등에 관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민법 제950조 1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50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회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친족회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친족회 대표자를 정하며(민법 제961조), 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이나 그 가에 연고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민법 제963조),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민법 제966조)고 하였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때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945조 1항)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 채무 관계가 있을 때는 후견인은 재산목록 작성 완료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도록 규정(민법 제945조 2항)하고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지만, 친권자가 정한 교양 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강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945조 3항)하고 있다.

또한 친족회는 동의를 요하는 혼인(민법 제808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할 때(민법 제951조), 즉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결혼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민법 제808조)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친족도 전통 사회의 부계친족집단이 담당했던 기능을 그대로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족은 근친혼의 금지의 범위가 되어 2005년 개정된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법적으로 금지된다(민법 제809조). 그리고 가족 및 친족은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되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의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민법 제814조).

이처럼 친족 간 상호작용이 근친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옥선화 외, 2000)와는 달리 법에 규정된 친족은 조선후기 부계친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는 실체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친족 기능에 대한 현실성 없는 규정이 실제에서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올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가족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하나의 작업으로, 가족관련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 및 친족의 의미, 범위 및 기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법인 헌법, 민법, 형법,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산림조합법, 형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에 규정된 가족의 의미는 개인보다 가족이 중시되고 우선시되는 가족주의가치가 아닌 개별 가족원의 존엄이 지켜지며, 양성 평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인간공동체로서의 의의를 강조한다. 가정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개인-가족-지역사회-국가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가족을 이해하며, 개인이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또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리면서 개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처럼 법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는 결혼과 가족의 안정성 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통적 가족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을 존엄성과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화하여 개인의 주관적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구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가족 관점을 표방한다.

하지만 유일하게 가족의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자유주의적 가족 관점을 지향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족의 기

준은 혼인, 혈연, 입양에 한정하는 등 가족 형성의 기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를 보인다.

그리고 법에서는 가족 및 친족관계를 다른 관계에 우선하는 특별한 사적인 신분관계로 규정하면서 가족 및 친족을 공적인 법질서를 뛰어넘는 특수한 관계의 집단으로 규정한다.

둘째, 법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가족의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혼인, 혈연, 입양에 기초한 신분관계에 한정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관점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법 규정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 헌법과 하위법 간 불일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특히 민법의 가족 범위는 호적등본을 대체하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생식가족과 부모를 가족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적용되지 못하는 등 법 규정을 개정한 의의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실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족의 범위에 비해 민법의 가족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현실성을 갖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또한 결혼을 통해서 원가족으로부터 분화를 해야 건강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 보웬의 이론이나, 결혼은 독립된 성인의 결합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결혼관점에서 볼 때, 원가족뿐만 아니라 혈족까지 확대된 가족범위 조항은 가족관계상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가족생활의 실제를 반영한 측면도 있어, 개정된 민법은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가족의 생활공동체적 특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 범주는 친족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

법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는 조선 후기의 유복친 및 4대 봉사를 지내야 하는 당내친의 범위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으며, 남녀평등 사상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친족 범위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셋째, 법에 규정된 가족의 기능은 친권, 양육과 교육, 후견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규정은 어느 정도 가족에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족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의 자녀양육 및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에서는 아동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강조하는데 비해, 민법 조항은 전통적인 수직적 부모-자녀관계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의 생활을 규제하는 의미의 조항이 많다. 이러한 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에 규정된 친족은 여전히 조선 후기 부계친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친족 간 상호작용이 근친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옥선화 외, 2000)와는 달리 법에 규정된 친족은 조선후기 부계친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는 실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 기능에 대한 현실성 없는 규정이 실제에서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올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처럼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은 헌법 등에서 규정한 가족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조은(1983)이 지적한 것처럼, 서구적인 핵가족적 혈연집단도 아니고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 개념도 아니며 오히려 확장된 혈연관계망으로서 친족 개념이 가족 개념과 혼선을 빚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현재 중층적인 가족가치관으로 인해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정생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가족원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부계 가부장제적 요소가 법 이념에서 충돌하며, 가족범위 규정 등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실제 생활하는 가족과 부양, 상속 및 보호받아야 할 유족 범위에서 차이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 헌법이 현실과 괴리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원하든 원하지 않든 헌법의 역동성은 사라지며, 동시에 헌법의 현실지배적인 규범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임규철, 2002). 특히 가족 및 친족관계는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에도 해체되기는 어렵지만, 관계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현실적인 가족 및 친족 개념에 대한 법 조항은 법 규정 내 일관성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가족의 현상을 법에 나타난 가족 및 친족 개념을 통해 진단해 보았고 연구목적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첫째, 가족의 구성과 기능이 보다 다양해지면서도 전통 가족주의 이념이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잔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국 가족의 현 주소를 보여주며, 변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둘째, 가족관련 법의 공신력을 재고할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청소년 관련법들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법의 공신력에 오점을 남겼듯이 가족 개념 역시 가족정책을 위해서는 일관된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생활은 세대 및 성(性)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법보다 일관된 이념과 정의, 그리고 사회적 변

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법 규정들은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본 논문은 의미를 갖는다.

■ 참고문헌

고현선(1994).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9**, 3-20.

김경동, 이온죽(1994).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213-255.

김엘림, 조승현(2005). **생활법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엘림, 조승현, 최정학(2009). **생활법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철수(2002). **헌법학신론**. 서울:박영사.

김혜선, 박혜인, 옥선화(2003). **가족관계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혜선, 박혜인, 홍형옥(2004). **한국가정생활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혜숙, 김은희, 김항원, 유처인, 장현섭(1999). 한국가족/친족 연구의 쟁점. **가족과문화 11**(1), 1-22.

김혜영(1996). 한국 가족문화의 계급별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경제와 사회 1**(31), 240-262.

노명호(1987). 고려시대 친족조직의 연구상황. **중앙사론 5**, 173-189.

박부진(1996).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가족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접근. **인문과학 연구논총 14**, 279-294.

배경숙(1988).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과 그 대책. **학생생활연구 9**, 47-91.

변화순(1992).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서울과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35권.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최윤정(2004).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성미애(2006a). 중년 기혼남녀의 가족/친족 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39차 춘계학술대회지**, p. 303.

성미애(2006b).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59-72.

신영호(2001). 현행 민법상 친족의 의의와 범위. **현대민사법학의 과제**. 서울: 관원정조근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안호용(2000). 한국 가족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제3집**, 89-132.

양옥경(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5-199.

양창수(1997). **민법연구**. 서울: 박영사.

양현아(2007). 한국 가족과 국가의 관계 고찰: 최근 가족관계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젠더법학회 제1차 심포지움 발표 논문**. pp. 6-29.

오청미, 최연실(2006).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 Bowen이론과 McMaster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199-223.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 · 사회과학 중점영역 연구 결과 보고서.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20.

유계숙(2004).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성인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73-180.

유계숙, 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79-94.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이광규(1986).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도시 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2002). **한국가족의 현주소**. 서울: 학지사.

이병화(2003). **현대법학개론**. 서울: 에듀컨텐츠.

이상욱(2002). 친족편 제1장 총칙 · 제6장 친족회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16**(2), 41-76.

이영숙, 박경란(2002). 청년과 중년의 가족개념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10), 217-230.

이재경(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15**(2), 55-86.

이효재(1990). 한국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임규철(2002). '가족'의 헌법상 의미에 관한 비판적 고찰. **헌법학연구 9**(1), 459-486.

장경섭(1994). 가족과 정치생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장현섭(1994). 가족의 미래.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정현숙, 옥선화(2008). **가족관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조 은(1983). 산업화와 신가부장제.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조은경, 정혜정(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6

조은숙, 옥선화(1995). 가족상 연구의 접근법 및 그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3**(1), 111-123.

조정문(1997). 한국사회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13**(1), 87-114.

최홍기(2006).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전통과 현대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2006). **가족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경혜, 윤성은(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177-20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가족특별위원회(2005). 한나라당 가족 up-grade 비전-신가족주의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자료집.

홍지윤(2003). 보웬의 가계도를 활용한 부부의 자아분화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결혼 5년이내 부부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Carter, B., & McGoldrick, M.(1989).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Boston: Allyn & Bacon.

Gubrium, J. F., & Holstein, J. A.(1990). **가족이란 무엇인가?** 최연실, 조은숙, 성미애 (공역). 서울: 도서출판하우. (1997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09년 2월 3일
심사시작일 : 2009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3월 19일